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48
----------	-----

2019.03.15.(금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상식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9년 2월 26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2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3월 8일

(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상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도내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
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을 위한 지원사업(안 제6조)

○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·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
체 설립 권장과 활동 지원 사항(안 제7조)

○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·법인·단체에 사무
위탁 규정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전문위원 : 오문석)

- ‘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’은 도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」

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.
2. “창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 및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소상공인 관련단체”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.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)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
2.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
3. 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
4.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재해·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
5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건립한 전문상가단지의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
6. 「중소기업기본법」,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지원
7. 그 밖에 도지사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)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·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사무의 위탁)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도의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·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“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제8조(소상공인 창업 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
2.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·자문 및 교육
3. 자금조달, 인력, 판로 및 사업장 입지(立地)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4.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·자문 및 교육
2.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·인력·판매·수출 등의 지원
3.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,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
4.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2조(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)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(이하 “폐업 소상공인“이라 한다)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재창업 지원
2.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
3.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2조의2(재해·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) 정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및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4조(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·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“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1.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
2.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
-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.
-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-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(支會)를 둘 수 있다.

-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-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□ 중소기업기본법
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(小企業)과 중기업(中企業)으로 구분한다.

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제8조(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) ①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.

[별표 3] <개정 2017. 10. 17.>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제8조제1항 관련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	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	
2. 음료 제조업	C11	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
15. 가구 제조업	C32	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7. 수도업	E36		
18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	
19. 광업	B		
20. 담배 제조업	C12	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	
29. 건설업	F		
30. 운수 및 창고업	H		
31. 금융 및 보험업	K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	
32. 도매 및 소매업	G		
33. 정보통신업	J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 제외)		

35. 부동산업	L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비고
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□ 소득세법

제168조(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)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
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를 준용한다.

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·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.

1.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
2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□ 부가가치세법

제8조(사업자등록)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
□ 유통산업발전법

제20조(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
1.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협동조합·사업협동조합·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2.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 매출액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상가단지 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>

□ 중소기업협동조합법

제3조(종류 등)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협동조합(이하 “조합“이라 한다)
2. 사업협동조합(이하 “사업조합“이라 한다)
3. 협동조합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“라 한다)
4. 중소기업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“라 한다)
- ② 조합,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발굴·지원하여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2. 비용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의 소상공인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업비

3. 관련 조문

- 안 제6조(지원사업) 제1호~6호
 -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소상공인 창업 지원
2.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
3.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
4. 재해·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
5.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건립한 전문상가단지의 경영환경 개선 지원
6.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지원
7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재정수반요인 : 소상공인 지원 육성에 관한 사업비
- 나. 추계의 전제 :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으로 함
- 다. 추 계 결 과 : 4,070백만원(국비 1,285, 도비 1,746, 시군비 899, 기타 140)
- 라. 재원조달방안 :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(세출)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
소상공인 포럼 등 4개 사업	4,070	670	1,600	1,170	260	370

※ 단위사업별 비용추계내역 : 별첨

6. 작성자 :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장 정경화(220-3210)

소상공인 육성 단위사업별 5개년(2019~2023) 투자계획

사업명	재원별	사업비(천원)					
		계	19년	20년	21년	22년	23년
4개 사업	합 계	4,070,000	670,000	1,600,000	1,170,000	260,000	370,000
	국비	1,285,000	200,000	700,000	385,000	0	0
	도비	1,745,500	320,000	400,000	505,500	160,000	360,000
	시군비	899,500	140,000	490,000	269,500	0	0
	자담	140,000	10,000	10,000	10,000	100,000	10,000
소상공인 포럼	소 계	190,000	20,000	20,000	20,000	110,000	20,000
	국비	0					
	도비	5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
	시군비	0					
	자담	140,000	10,000	10,000	10,000	100,000	10,000
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	소 계	600,000	200,000	0	200,000	0	200,000
	국비	0					
	도비	600,000	200,000		200,000		200,000
	시군비	0					
	자담	0					
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	소 계	600,000	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
	국비	0					
	도비	600,000	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
	시군비	0					
	자담	0					
소상공인 제로페이 인프라 지원	소 계	2,680,000	450,000	1,430,000	800,000	0	0
	국비	1,285,000	200,000	700,000	385,000		
	도비	495,500	110,000	240,000	145,500		
	시군비	899,500	140,000	490,000	269,500		
	자담	0					